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79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찬 성 자 : 엄샛별 의원

1. 제안이유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추어 골목상권 활성화 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범위 산정 관련 단서조항 삭제(안 제4조제1항)
-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 구역 내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규정 삭제
 -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규정 삭제

- 해당 구역 전체 상인의 명부 신설
- 해당 구역 지번 및 면적 신설
-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서식 신설 (안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안 제4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2. 5. ~ 2.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로 한다.

- 2.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 3. 해당 구역 지번과 면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쳐	d리절차·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	이 적지 않습니	1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상점가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², 건물	연면적:	m²,	, 영업장 면적	† :	m²,	점포 수:	개
상 인 조 직	상인회명					대표자명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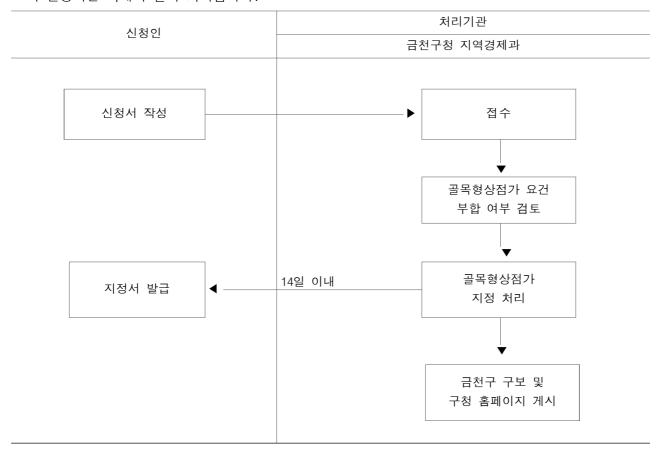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1 80a/m² 1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 1. 상점가명:
- 2. 대명자명:
- 3. 소 재 지:
-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뒤쪽)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이력					
변경일자	변경내용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	제4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①
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① 별지 제1호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	서식에 따라 다음
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u><</u>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	<u>단 삭제></u>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의 수	
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	2.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의 1 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	
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	3. 해당 구역 지번과 면적
<u>분의 1 이상의 동의</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	3
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
<u>관한 확인서</u> 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	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09호, 2021. 9. 29.,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골목형상점가" 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u>2천 제곱미터</u>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제4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2.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3.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1. 명칭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209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별법
[시행 2023, 10, 31.] [법률 제1982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 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69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